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갈등의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장상기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1502
----------	------

발의년월일 : 2020년 05월 22일

발 의 자 : 장상기, 채유미, 양민규,
홍성룡, 김화숙, 박순규,
김기덕, 김광수, 김제리,
김태호, 전병주 의원(11명)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교육청이 교육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교육갈등을 예방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 등을 마련함으로써 원활한 교육정책 수행과 교육갈등으로 인해 소비되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여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내용을 정함(안 제5조).
- 나.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나. 갈등조정협의회에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제9조).
- 다. 갈등관리전문기관 등의 지정·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다. 기 타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갈등의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교육갈등 예방과 조정에 관한 역할·책무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갈등관리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갈등“이란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 이라 한다)이 교육정책(자치법규의 제정·개정과 폐지,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추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2. “갈등관리“란 교육청이 교육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갈등영향분석“이란 교육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교육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예상되는 교육갈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은 교육갈등 예방 및 조정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교육갈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발굴하여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교육갈등의 예방과 조정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갈등영향분석) ① 교육감은 교육정책을 수립·시행·변경함에 있어서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하 ‘교육공동체’라고 한다) 등에게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주거나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교육정책의 개요 및 기대효과
2.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조사 내용
3. 교육관련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
4. 교육갈등 유발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쟁점
5. 교육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6. 교육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7. 그 밖에 교육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제2항의 갈등영향분석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 ① 교육감은 교육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하여 교육정책 결정과정에 이해관계인·교육공동체 또는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의사결정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교육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제1항에 따른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결과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갈등조정협의회) ① 교육감은 교육갈등을 원만하게 조정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해당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위원 중에서 위원 간 합의로 선정한다.

② 위원은 소속 공무원을 포함하여 이해관계인(이하 “당사자”라 한다) 및 전문가로 한다.

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 외의 관련 단체 또는 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활동기간을 정하여 운영한다. 다만 필요 시 위원 간 합의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협약결과문의 내용 및 이행) ① 협의회는 갈등사안에 대하여 조정된 협약결과문을 작성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협약결과문의 내용은 법령 등에 위배되거나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협약결과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갈등관리전문기관 등의 지정·운영)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갈등관리와 관련된 전문가 및 전문기관 등을 위촉 또는 지정·활용할 수 있다.

1. 갈등조정협의회 참여 등 자문
2. 갈등관리를 위한 정책·법령·제도·문화 등의 조사·연구
3. 갈등관리매뉴얼의 작성·보급
4. 교육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5.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조사·연구
6.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방법에 관한 조사·연구
7. 그 밖에 교육갈등의 예방·해결에 필요한 사항

제11조(비밀유지) 교육감과 소속 공무원, 협의회위원 및 제10조의 전문가 및 전문기관은 교육갈등 예방 및 조정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갈등관리매뉴얼의 활용) 교육감은 교육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갈등관리매뉴얼을 활용할 수 있다.

제13조(갈등관리실태의 점검 등) 교육감은 연 1회 이상 갈등관리 실태 등을 점검

하고 평가해야 한다.

제14조(수당지급 등) 교육감은 제7조에 의해 설치된 협의회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나 제10조의 전문가 및 전문기관의 활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갈등의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갈등의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제5조(갈등영향분석), 제7조(갈등조정협의회), 제10조(갈등관리전문기관 등의 지정·운영), 제13조(수당지급 등)에 따라 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제3조제1항제1호)

나. 추계결과 ≙ 290,240천원(연평균 58,048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290,240천원으로 연평균 58,048천원임
- 추계의 전제
 - 갈등영향분석 비용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기 추진 사업인 ‘지방교육재정분석평가 관리’ 사업예산을 준용하여 비용추계
 - 갈등조정협의회 비용은 이와 유사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 추진 사업인 ‘노사협의 회운영’ 사업예산을 준용하여 비용추계
 - 갈등관리전문기관 등의 지정·운영 비용은 이와 유사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 추진 사업인 ‘학교폭력 화해·분쟁조정 전문가 양성’ 사업예산을 준용하여 비용추계
 - 물가상승률 미반영
 - 비용은 2021년부터 발생하고 추계기간 이후에도 계속 발생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 비용(합계) ≙ 290,240천원(연평균 58,048천원)
 - 총비용 = 갈등영향분석 + 갈등조정협의회 + 갈등관리전문기관 등의 지정·운영 + 수당지급 등
 - = 20,800천원 + 48,440천원 + 213,000천원 + 8,000천원
 - = 290,240천원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합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안제5조	갈등영향분석	4,160	4,160	4,160	4,160	4,160	20,800
	안제7조	갈등조정협의회	9,688	9,688	9,688	9,688	9,688	48,440
	안제10조	갈등관리전문기관 등의 지정·운영	42,600	42,600	42,600	42,600	42,600	213,000
	안제13조	수당지급 등(여비)	1,600	1,600	1,600	1,600	1,600	8,000
	소계(b)	58,048	58,048	58,048	58,048	58,048	290,240	
	□총 비용(b-a)	58,048	58,048	58,048	58,048	58,048	290,240	

1) 갈등영향분석 ≍ 20,800천원

○ 산출방식 $\sum_{i=1}^5$ (연간갈등영향분석비용)_i = 20,800천원

※ i = 비용추계 연차(2021~2025년)

- 연간 갈등영향분석 비용 ≍ 4,160천원

※ 2020년 ‘지방교육재정분석평가관리’ 예산 준용

- 내용 : ① 지방교육재정 평가 지표에 따른 운영성과평가 및 교육부 현장 방문평가 실시
- ② 지방교육재정 자료 분석

· 소요예산 : 4,160천원

· 운영비		3,120	천원
- 인쇄비	20,000원 × 90부 =	1,800	천원
- 자료료	(80,000원+30,000원) × 6명 × 2회	1,320	천원
· 업무추진비		1,040	천원
- 재정분석평가협의회	20,000원 × 13명 × 4회 =	1,040	천원

자료 :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2) 갈등조정협의회 ≍ 48,440천원

○ 산출방식 $\sum_{i=1}^5$ (연간갈등조정협의회비용)_i = 48,440천원

※ i = 비용추계 연차(2021~2025년)

- 연간 갈등조정협의회 비용 ≍ 9,688천원

※ 2020년 ‘노사협의회운영’ 예산 준용

- 내용 : 대립과 갈등의 노사관계를 청산하고 대화를 통한 상호협조로서 근로자복지증진과 교육청 발전 도모

· 소요예산 : 9,688천원

· 운영비			8,248	천원
- 일반수용비	9,350원 × 20명 × 4회	=	748	천원
- 연수기관 위탁연수	250,000원 × 30명		7,500	천원
· 업무추진비			1,440	천원
- 노사협의회	20,000원 × 18명 × 4회	=	1,440	천원

자료 :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3) 갈등관리전문기관 등의 지정·운영 ≙ 213,000천원

○ 산출방식 $\sum_{i=1}^5$ (연간갈등관리전문기관등의지정·운영비용)_i = 213,000천원

※ i = 비용추계 연차(2021~2025년)

- 연간 갈등관리전문기관 등의 지정·운영 비용 ≙ 42,600천원

※ 2020년 '학교폭력 화해·분쟁조정 전문가 양성' 예산 준용

· 내용 : 갈등조정 전문가 양정으로 관계회복 중심의 생활교육 확산

· 소요예산 : 42,600천원

· 운영비		=	37,280	천원
- 교재 제작비	1,000,000원 × 5과	=	5,000	천원
- 숙기 원고료	10,000원 × 10매 × 5명 × 5과	=	2,500	천원
- 전문가 양성 강사수당	220,000원 × 20회 × 5과	=	22,000	천원
- 시설 임차료	800,000원 × 5과	=	4,000	천원
- 행사용품비	300,000원 × 5과	=	1,500	천원
- 기타일반수용비	1,140,000원 × 2회	=	2,280	천원
· 업무추진비		=	5,320	천원
- 협의회비(본청)	20,000원 × 16명	=	320	천원
- 협의회비(지역청)	20,000원 × 25명 × 2회 × 5과	=	5,000	천원

자료 :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4) 수당지급 등 비용 ≙ 8,000천원

○ 산출방식 $\sum_{i=1}^5$ (연간수당지급등비용)_i = 8,000천원

※ i = 비용추계 연차(2021~2025년)

- 연간 수당지급 등 비용 ≙ 1,600천원

· 연간 수당지급 등 비용 = 전체 협의회 위원 수 × 1인당 국내여비 단가 × 1년간 회의 횟수
 = 20명 × 20,000원 × 4회
 = 1,600천원

※ 1인당 국내여비 단가는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2만원으로 가정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승우

사업평가팀장 이정수

분 석 관 원동아

☎ 02-2180-7953

e-mail : dongya1@seoul.go.kr